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12

발의연월일: 2020. 11. 2.

발 의 자: 박재호 • 박성민 • 오영환

이용빈 · 양정숙 · 위성곤

허 영・김정호・오영훈

정춘숙 · 정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주로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사건,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관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어 공중화장실 범죄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관리의 범위를 넓히고,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 금지 및 비상벨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 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1조 등).

법률 제 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생적 관리에"를 "관리에"로, "위생상의 편의와"를 "편의와"로 한다.

제4조 중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을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마련을"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서"를 "제5항까지에서"로 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청결을"을 "청결 및 이용자 보호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점검"을 "점검 등"으로 하고,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

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하 "카메라등" 이라 한다)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카메라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를 지 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후단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벌칙)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 등을 설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를"을 "제14조제1항을"로 한다.

2의2.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비상벨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상벨을 설 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제1조(목적)		
등의 설치ㆍ이용 및 <u>위생적 관</u>	<u>관리에</u>		
<u>리에</u>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국민의 <u>위생상의 편의와</u> 복	- <u>편의와</u>		
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u>.</u>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책무)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u>편익 증진, 위생수준</u>		
<u>향상을</u>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마련		
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u> </u>		
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			
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u>		
	하는 자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		
	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④ (생 략)

- ⑤ 제1항부터 <u>제4항까지에서</u>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생략)
 -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 화장실과 그 주변의 <u>청결을</u> 위 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2조(시설 <u>점검</u>) (생 략)

<신 설>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여	기나 !	三
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설치	<u>린</u>
<u>기계장치</u> 틀	를 말한	:다)을	설치さ	카
여야 한다.	<u>.</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u>⑥</u>	<u>저</u>	5항까지]에서-	-

<u>6</u>	 제5항까지에서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현 행과 같음)

2		
청구	별 및	0]
용자 보호를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설 <u>점검 등</u>)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 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의 내 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이하 "카메라등"이라 한다)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제14조(금지행위) (생략)

<신 설>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신 설>

- 3. 4. (생략)
-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생 략)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검
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 4. (현행과 같음)
③ 제14조제1항을
(4) (현행과 같음)